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13. 문정복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0.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

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 또는 경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부담과 필요성(회계적으로는 부담금 부과·징수와 지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부담금 부담(부과·징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대할 수 있음¹⁾.

다만, 이러한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부담금 필요성(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신

1)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있음.

2) 분양가 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부담금만큼을 분양가에 전가하지 않는지 여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수분양자인 국민의 부담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완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신설 수요가 그에 명확하게 비례하여 감소하고 있지는 않음.

구체적으로 학생수는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감소하였으나(연평균 1.7%), 학교수는 소폭 증가(0.5%)하였고, 최근 10년간 658개(연간 평균 60여개)의 학교가 신설(개교일 기준)되는 등 여전히 신설 수요가 있는 상황임³⁾.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는 이러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담 및 필요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⁴⁾.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정도는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었음.

①부과요율(공동주택 기준)은 0.8%에서 2005년 0.4%로 완화되었다가 2009년 0.8%로 다시 이상되었고 ②부과대상 세대수도 당초 300세대 이상에서 2005년 100세대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3) <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추이 >

(단위: 만명, 교, 학급,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학생 수	583	570	556	544	535	532	527	△1.7
학교 수	16,213	16,357	16,380	16,478	16,611	16,636	16,749	0.5

주)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기준

자료: 교육부

4) 최근 5년간 학교용지 매입경비(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외의 경우도 포함) 중 학교용지부담금의 비율은 25% 수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또는 경감)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원(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용지 매입경비 중 학교용지부담금 비율 >

(단위 : 억원, %)

구분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교육청재원	계
금액	19,784	9,260	4,583	2,769	36,396
(비율)	54.4	25.4	12.6	7.6	100.0

* 자료 : 교육부

< 부담금 산정기준 연혁 >

구분		제정 (1996.1.29.)	2000.1.28.	2005.3.24	2009.5.28.~ 현행
부 과 요 율	공동주택	-	1천분의 8	1천분의 4	1천분의 8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1천분의 15	1천분의 7	1천분의 14
세대수		300세대	300세대	100세대	100세대
부과대상		분양받는 자	분양받는 자	분양하는 자 ⁵⁾ (개발사업시행자)	분양하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비 고			부과요율 기준 신설	국민부담 경감 사유	학교용지 매입 비용 충당 개발사업시행자 책임 강화

주1) 부과요율은 분양가격 대비 비율임

자료 : 법령정보시스템 및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상과 같이 2005년에 부과대상 세대수를 확대, 2009년에 부과요율을 인상한 이후 상당기간 부담금 산정기준이 유지되어 왔고, 학교신설 수요 등도 상대적으로 변화된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담의 정도, 학교용지 매입비용 충당,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용지법은 예외적으로 ‘학교용지의 확보’ 외에 ‘기존 학교의 증축’에 대해서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넓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기존학교 증축비를 지원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임⁶⁾.

5) 당초 특례법 시행시(96년) 분양받는자로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2005년에 분양하는 자(개발사업시행자)로 부담금 부과대상이 변경되었음.

6) 2005년, 증축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었으나, '23.3.15.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에서 120억원을 확보해 11개 시·군 기존 학교 16곳에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 것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를 지원한 첫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와 달리 증축에 대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경비 분담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⁷⁾, 학교용지특별회계의 운영권자인 시도지사와 교육감간 협의가 실제로 용이하지 않음에 따른 것임.

이에 문정복의원안은 ‘기존 학교의 증축’에 대해서도 현행 학교용지 확보와 같이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 증축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 확보 외에 기존 학교의 증축에 대해서도 부담금 사용용도를 넓히고 있음에도 분담비율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지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문정복의원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사례임.

7)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략)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제출(2건) 및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